
예 비 비 사 용 보 고

2021. 4.

시민소통기획관

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

- '20년 연말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「천만시민 긴급멈춤 기간」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

○ 사업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코로나19 연말 확산 저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추진계획 (시민소통담당관-20404, '20.12.8)
-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(예산담당관-14573, '20.12.12)

○ 사업내용

- 캠페인명 : 천만시민 긴급멈춤 기간
- 기 간 : '20. 12월
- 사업내용 : 방송 공동캠페인, 온라인 캠페인, 홍보물 제작 및 부착 등
- 소요예산 : 450,000천원

□ 예비비 사용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 과 목					예산액	금회지출액		승인일자
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예산 담당관	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 (일반회계)	예비비	예비비 (801)	일반예비비 (801-01)	109,397,469	-	450,000	'20.12.12
시민소통 담당관	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소통 시정구현	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	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201-01)	-	450,000	-	'20.12.12

※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단위 사업 내 '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' 세부사업 신설

○ **사용근거**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 제1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○ **예비비 사용 사유 :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함
- '20년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민행동요령부터 재난긴급 생활비 등 시민지원책,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방역수칙 등 홍보 등으로 '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' 예산 조기 소진
- '20.11월말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참여 독려를 위한 「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」 캠페인 추진을 위해 재원 마련 필요

□ **예비비 집행 내역**

○ **캠페인 시행 및 매체별 예산 집행 완료 : '20.12.31**

- SBS TV 방송 공동 캠페인(200백만원)
- 민간포털, 모바일 등 활용 온라인 캠페인(97백만원)
- 대중교통, 공공시설 등 홍보물 제작 및 부착비 등(134백만원)